

신구조문 대비표

* 여신관련 총 2개 약관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p>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p> <p>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 제6호, 제4호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p> <p>④ 신설</p>	<p>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p> <p>① ~③ (현재와 같음)</p> <p>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p>제15조(위험부담 · 면책조항)</p> <p>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 · 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 · 증서 등과 도장 · 서명에 관하여 위조 · 변조 ·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p>	<p>제15조(위험부담 · 면책조항)</p> <p>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 · 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 · 증서 등과 도장 · 서명에 관하여 위조 · 변조 ·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u>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p>제18조(통지의 효력)</p> <p>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p> <p>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u>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u></p>	<p>제18조(통지의 효력)</p> <p>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p> <p>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u></p>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근질권설정계약서(예적금융,수익권 용,유가증권용)	<p>제 4 조 위험부담, 면책조항</p> <p>(2) 채권자가, 담보증서(통장), 담보물수령증 등의 증서상의 인영 또는 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p>	<p>제 4 조 위험부담, 면책조항</p> <p>(2) 채권자가, 담보증서(통장), 담보물수령증 등의 증서상의 인영 또는 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u>다만,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